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6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2024 - 31

나. 발의자: 박성호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4년 3월 4일

라. 상정일자: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4. 3. 6.)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2023.12.14.)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 상한이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규정됨.

지난 2024년 2월 28일 우리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의결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기존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

조활동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2항)

나. 기타 자구 수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제3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023.12.14.>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상향분이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함.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제2항)
- 기타 자구 수정

다. 비용추계

- 의정활동비 인상을 통한 추가 필요 재원(1개월)

구분	현행	개정 후	인상분(1인)	인상분 총계(23인)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	120	30	690
보조활동비	20	30	10	230
계	110	150	40	920

- 인상된 의정활동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추경을 통해 12개월의 인상분인 110,400,000원 예산 확보 필요
- 920만 원 * 12개월 = 11,040만 원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우리 강서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의정활동비 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서는 의정활동비의 구체적인 금액의 책정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2024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을 통해 규정한 것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023.12.14.>제2조제2항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 2026년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통지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 2026년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의장에게 통지합니다.

- 의결일자: 2024. 2. 28.(수)
- 결정사항: 2024년~2026년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 2024년 ~ 2026년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0,000 원

구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합 계
지급기준액	월 1,200,000 원	월 300,000 원	월 1,500,000 원

2024년 2월 28일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강부경 (인)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의정비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위원회는 그 의정비심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② 의정비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위원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 ⑤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의정비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위원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의정비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의정비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